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06 발의연월일: 2025. 1. 2.

발 의 자: 한정애·허성무·이학영

조인철 • 이강일 • 문진석

송옥주 · 이수진 · 김영배

권향엽 • 민홍철 • 조정식

서영교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 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기하여 별도의 민사소송 없 이도 즉시 압류,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집행권원 으로서의 기능을 가짐.

하지만 금전소비대차의 변제를 위한 공정증서와 관련하여, 이러한 강력한 집행력에도 불구하고 작성과 이후 강제집행에 있어 실제 거래 내역이 반영되지 않아 불법사채업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절박한 채무자를 압박하고 공정증서상 채권액을 부풀리거나, 전부 혹은 상당액을 변제받았음에도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액 전액을 청구하거나 전액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피해자인 채무자로서는 강제집행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

로 대응하며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사채업자의 의도적인 현금 대출로 실제 대출금과 공정증서상 채권액의 차이를 증명하기어려울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서는 공정증서상 채권액 전액을 공탁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실질적인 대응이 불가능하고, 나아가 공증과정에서 사채업자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리하는 경우 강제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못함에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 또한 있음.

이에 금전소비대차의 변제를 위한 공정증서에 관해 공정증서 작성 시와 강제집행 시 실제 거래 내역이 반영되고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작성 시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제로 채무자에게 지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내역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공증인이 확인하도록 하고, 공증과정을 녹음하게 하며, 공증 이후 채무를 현금으로 변제 시 그 변제금이 강제집행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고지하게 하고, 채무자의 공증 촉탁 대리인을 채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 제한하며, 집행문 부여 시 판사가 채무자의 변제 등이 반영된 현존 채무액과 공정증서 상 채권액의 일치를 심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제13조, 제25조, 제27조의2, 제30조의2, 제35조, 제38조, 제40조, 제56조의5, 제56조의6, 제88조).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전소비대차의 변제를 위한 집행증서"란 금전소비대차의 변제를 위하여 작성되는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의 공정증서와 금 전소비대차 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발행한 어음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말한다.

제13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금전소비대차의 변제를 위한 집행증서의 경우,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제로 채무자에게 지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 내역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가 없는 경우

제27조의2 및 제3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채무액의 확인) 금전소비대차의 변제를 위한 집행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공증인은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제로 채무자에 게 지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내역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를 촉탁인으로부터 제출 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제30조의2(공정증서의 대리 촉탁 제한) ①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이외의 자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채무자를 대리하여 촉탁할 수 없다.
 - ② 공증인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부터 촉탁을 받아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리인이 제1항에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5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 금전소비대차의 변제를 위한 집행증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실
 - 가.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제로 채무자에게 지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내역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촉탁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사실
 - 나.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에게 제38조제6항의 고지를 한 사실
- 다. 제38조제7항에 따른 녹음을 한 사실 제38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공증인은 금전소비대차의 변제를 위한 집행증서의 경우, 공증 이후 채권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더라도 그 변제금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금액에 반영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⑦ 공증인은 금전소비대차의 변제를 위한 집행증서의 경우 공증과 정을 녹음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금전소비대차의 변제를 위한 집행증서의 경우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제로 채무자에게 지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내역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제56조의5를 제56조의7로 하고, 제56조의5 및 제56조의6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5(금전소비대차의 변제를 위한 집행증서의 집행문 부여) 금전 소비대차의 변제를 위한 집행증서에 대한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 하는 공증인이 그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 의 허가를 받아 부여한다. 이 경우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채무자의 변제 등에 따른 현존 채권액과 집행증서 기재 채권액의 일치 여부 를 심사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 리인을 심문할 수 있다.

제56조의6(금전소비대차의 변제를 위한 집행증서의 집행 범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제56조의5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집행증서 기재채권액의 일부만이 현존 채권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금액의 범위에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집행문에 기재하도록 공증인에게명하여야 하고 공증인은 이를 집행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8조 중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 1.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게 하지아니한 경우
- 2.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계좌내역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촉탁인 으로부터 제출 받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변제금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금액에 반영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38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증과정을 녹음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56조의6을 위반하여 집행문 부여 시 현존 채권액 범위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채무자의 대리인이 제30조의2제1항에 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공 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전소비 대차의 변제를 위한 집행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

제3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용어의 뜻) 이 법에서	제1조의2(용어의 뜻)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금전소비대차의 변제를 위			
	한 집행증서"란 금전소비대차			
	의 변제를 위하여 작성되는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			
	의 공정증서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발행한 어음을 첨부하여 강제			
	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적			
	은 공정증서를 말한다.			
제13조(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제13조(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은 임명공증인이				
될 수 없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9.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5조(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제25조(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어느 하나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

- 1. ~ 3. (현행과 같음)
- 4. 금전소비대차의 변제를 위한 집행증서의 경우,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제로 채무 자에게 지급되었음을 증명할수 있는 계좌내역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가 없는 경우

제27조의2(채무액의 확인) 금전소 비대차의 변제를 위한 집행증 서를 작성하는 경우, 공증인은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 제로 채무자에게 지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내역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촉탁인으 로부터 제출 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의2(공정증서의 대리 촉탁 제한) ①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이외의 자는 공정증서의 작성 을 채무자를 대리하여 촉탁할 수 없다.

 ② 공증인은 채무자의 대리인

 으로부터 촉탁을 받아 공정증

제35조(기재사항) 공증인이 작성 하는 증서에는 그 내용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 어야 한다.

1. ~ 10. (생략) <신 설>

제38조(증서의 작성 절차) ① ~ 제38조(증서의 작성 절차) ① ~ ⑤ (생략) <신 설>

서를 작성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리인이 제1항에서 정하는 자 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5조(기재사항) -----

1. ~ 10. (현행과 같음)

11. 금전소비대차의 변제를 위 한 집행증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실

가.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실제로 채무자에게 지 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 는 계좌내역 또는 이에 준 하는 자료를 촉탁인으로부 터 제출받아 확인한 사실 나.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대 리인에게 제38조제6항의 고지를 한 사실

다. 제38조제7항에 따른 녹음 을 한 사실

- ⑤ (현행과 같음)
- ⑥ 공증인은 금전소비대차의

<신 설>

제40조(부속 서류의 연철) ① 다 저음 각 호의 부속 서류는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에 연철(連綴)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이부속 서류 원본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원본 대신 그 등본을 연철할 수 있다.

1. ~ 3. (생 략) <u><신 설></u>

 4. (생 략)

 ② (생 략)

변제를 위한 집행증서의 경우
공증 이후 채권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더라도 그 변제금이 강
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금액에
반영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차
무자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에
게 고지하여야 한다.
⑦ 공증인은 금전소비대차의
변제를 위한 집행증서의 경우
공증과정을 녹음하여야 한다.
 40조(부속 서류의 연철) ①

]]40조(부속	서류의	연철)	1	

- 1. ~ 3. (현행과 같음)
- 4. 금전소비대차의 변제를 위한 집행증서의 경우 채권액에 해 당하는 금액이 실제로 채무자에게 지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내역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 5. (현행 제4호와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제56조의5(금전소비대차의 변제를 위한 집행증서의 집행문 부여) 금전소비대차의 변제를 위한 집행증서에 대한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그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한다. 이 경우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채무자의변제 등에 따른 현존 채권액과집행증서 기재 채권액의 일치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이를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을 심문할 수있다.

제56조의6(금전소비대차의 변제를 위한 집행증서의 집행 범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제56조의5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집행증서 기재 채권액의 일부만이 현존 채권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금액의 범위에서만 강제집행을 할수 있음을집행문에 기재하도록 공증인에게 명하여야 하고 공증인은 이를 집행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의 정본 등의 송달) (생 략)

제88조(벌칙) 임명공증인 또는 인 제88조(벌칙) -----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가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56조의5(집행권원인 공정증서 제56조의7(집행권원인 공정증서 의 정본 등의 송달) (현행 제56 조의5와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면-----

- 1.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 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 지 아니하거나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게 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계좌 내역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를 촉탁인으로부터 제출 받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변 제금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 는 금액에 반영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채무자 또는 채무 자의 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 니한 경우

<u><신 설></u>	4. 제38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
	증과정을 녹음하지 아니한 경
	<u>우</u>
<u><신 설></u>	5. 제56조의6을 위반하여 집행
	문 부여 시 현존 채권액 범위
	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u>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u>
<u><신 설></u>	6.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채무자의 대리인이 제30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자에 해당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
	지 아니하고 공정증서를 작성
	<u>한 경우</u>